#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58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 남인순 · 박홍배 · 김 윤

문정복 • 박희승 • 전현희

이수진 · 정을호 · 박주민

진선미 · 서영교 · 고민정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 나. 영양사 국가시험에 있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전공자는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 다. 입학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등을 졸업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신설).
- 라. 영양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하여 그 대학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갖춘"을 "갖추고 졸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대유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

람으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졸업한 경우

제26조제4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영양사 교육과정을 인증기관으로 한정한다) 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한 날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 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 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 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방송통신대학(이하 이 조 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는 요건을 갖춘 사람 로<u>서</u>---------<u>갖추고</u> 졸업한---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 <신 설> 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 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 람으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6개월 <신 \_설>

-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 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국가 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영양
  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
  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
  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
  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추고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
  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식품학

## ② · ③ (생 략)

- 제26조(수수료) ① ~ ③ (생략)
  -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 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 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지의제) <u>제15조제2항</u>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u> 노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으</u>
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추고 졸업한
<u>경우</u>
<u>④</u> ・ <u>⑤</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26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5조제4항</u>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제15조제4항</u>